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 의 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5. 17.(화) 15: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 (2022-23-08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OBS경인TV 주식회사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다.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후 증빙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경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신청 사업자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자가 신청하였습니다. <5> 도로교통공단 신청자격 관련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대법원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목적 범위 내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목적 범위와 관련한 견해 대립은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에서만 해당됩니다. 국가가 설립한 특수 공법인인 도로교통공단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과 공단 정관에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권리능력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나 방송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방송사업과 관련한 권리능력은 도로교통에 관한 방송으로 제한되므로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하는 것은 권리능력, 즉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 신청자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허가신청 공고 시 신청자격을 “법인의 경우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방송법 인접 법령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언상 법인의 존립 근거 및 방송

사업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정관」 등이 해당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격 판단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권자로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최종 권한이 있으며, 방통위가 수립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방송사업 허가권 행사를 보조하는 임시적 자문기관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결격사유 의결 유무를 불문하고 방통위 자체 심의 결과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신청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자 선정 원칙인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신청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자'의 의미는, 신청자격에서 명시한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는 종국적으로 평가 순위에서 제외되어 최고 득점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고 득점자의 결격사유는 사전에 고지한 재공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가> 신청자격입니다. 심사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신청 자격'의 '관련 법령'에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정관」 등 도로교통공단의 설치 근거 법령이 포함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도로교통공단의 방송사업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나 방송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하는 것은 심사기본계획에서 명시한 방송사항인 "방송사항 전반(종합편성)"의 범위를 벗어나며, '종합편성방송'은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범위로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도 다르므로,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신청자격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적격여부입니다. 허가신청 공고에서 제시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경인방송, 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3조, 도로교통공단 정관 제5조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선정절차입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하고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심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합니다. 신청법인 모두 650점 이상 획득하고 허가 최저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재공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주)경인방송과 도로교통공단을 제외하고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다> 선정대상법인입니다.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외한 5개 신청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OBS경인TV(주)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라> 허가절차입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OBS경인TV(주)가 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자본금 조달 완료를 확인 후 허가증 교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달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허가증 교부 시 투자자본금의 효율적인 사용, 연주소 운용 계획,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금 납부 등 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한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부가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허가대상 사업자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8페이지를 보시면 “선정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달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령 자본금 조달이 안 된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통상적으로 자본금 납입이나 법인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서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이것이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향후 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오늘 이 결정이 알려진 뒤에 OBS경인TV(주)가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나머지 서류작업이 3개월 이상씩 걸리는 복잡한 일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자본금 납입만 완료가 되면 허가증 교부는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현재 OBS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것은 라디오사업을 위해 사내유보 투자금 20억과 외부 자금조달을 통한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제시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즉시 할 수 있지만 제3자로부터 유상증자받는 부분은 우리가 통과한 시점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80억 정도 조달할 능력도 없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 한상혁 위원장

-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겠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제시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 이후 서류작업들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는 일은 없겠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투자하기로 한 쪽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그런 준비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사무처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2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정파 폐업한 뒤에 2년 2개월 동안, 그동안 경기방송에 몸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9.9㎴라는 매력적인 전파를 잃어야 했던 경기도민 여러분의 박탈감도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2개월 동안 자의와 상관없이 풍찬노숙(風餐露宿)해야 했던 경기방송 전직 종사자들과 그 가족,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이 의결에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도로교통공단의 자격미달로 인한 탈락 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격이 미달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공모단계에서부터 과연 도로교통공단이 이 방송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강행했고, 결국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그에 이은 법률자문을 거쳐 자격이 없음을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매끄럽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OBS는 이 문제인 라디오방송 사업권을 따게 되었는데 OBS는 이 사업 이외에도 OBS TV 문제,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통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사업을 잘하도록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짐을 하나 더 올리게 되는데 OBS는 경기도민의 공중파인 라디오방송을 추가로 떠맡게 되었다는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외부자금 조달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당한 사유라고 했을 때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장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과거 종편PP 승인 과정에서 신설 예정법인이나 기존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기한 등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가 보고받기로는 종편PP 사업자의 승인장 교부 신청기간을 1회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규사업자였기 때문에 1회가 연장된 것이지요? 그 외에 기존 방송을 하던 사업자가 이런 비슷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로 해서 연장됐던 경우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자 외 기존 사업자가 혜가증을 받은 후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방송국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되는 경우 MBN이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있는지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폐업해서 공모하고 방송되는 경우도 처음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신규사업자인 경우 채널A와 매일방송이 유보금을 만들지 못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1회 연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업자의 경우 그때 당시 돈 마련하는 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요? 소위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자본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100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판단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방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돈이 없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두 번째는 OBS가 2019년도 재허가받을 때 추진계획을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그런데 제출된 것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가 있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재허가 조건 중 사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사옥 이전과 관련해서 몇 회 봐주기 한 것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당시 작년 재허가 조건 점검 과정에서 1년 6개월이 지연된다고 보고했고, 그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그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 상임위원

- 1회 해당합니까, 아니면 2회 해당합니까? 애초에 OBS는 허가 당시 인천에 사옥을 이전하는 것을 추진계획에 넣어서 허가된 것 아닙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19년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재허가 말고 허가 시 최초 인천에 사옥을 만드는 것을 약속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업자가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가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방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로 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OBS가 재허가 당시에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위원회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허가증을 교부하고 3개월 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효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3월 27일 폐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이래 22년 전통의 지상파 라디오가 자진폐업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경기도민의 뉴스보도, 교통정보, 오락, 예능 등 알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경기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해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2위 사업자인 OBS가 애초 심사단계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대로 안 돼서 3개월이 연장되어서 또 다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로 인한 법률자문 비용, 행정비용, 시간 등 많은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홀함이 없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해고된 경기방송 종사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경기지역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OBS는 경기방송 복원을 위한 종사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희망을 일구는 따뜻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OBS는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방송에서 함께 했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라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추가적으로 보완 답변 올리겠습니다. OBS뿐만 아니라 전체 신청사업자와 관련된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은 심사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재허가 조건 이행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고 그것과 관련한 현황이나 신청법인의 재무적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사항이라고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처음 폐업한 날짜를 따지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갑작스런 폐업이었고, 우리가 폐업을 기간을 두고 충분히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舊 경기방송 쪽은 임의로 폐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날부터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경기지역의 방송시장 현황과 여러 가지 등 폐업하고 실패한 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의견수렴 그리고 내부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공고가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자 선정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과연 시장에 새롭게 사업할 자본이나 세력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도 재허가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3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실직을 했지만 저희 방통위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사업자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들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8월 4일에 의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속하게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늦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돌발 법률적인 판단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 있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들은 이미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2020년 한국방송 사상 유례없는 자진폐업으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중단된 이후에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향후 새로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조속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신규사업자 선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새롭게 선정된 방송사업자는 이 점을 명심해서

경기지역 청취자를 위한 좋은 라디오방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도 심사와 선정에 고생이 많았지만 경기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청취권 회복을 위해서 남은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되어 방송 중단 2년여 만에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 경기방송 직원들과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자 선정으로 경기지역의 여론 형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협가증 교부 등 남아 있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방송국 개국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이 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기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0분 폐회 】